

제주지방법원 2023. 10. 17 선고 2022가단669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8. 22.

판 결 선 고 2023. 10. 1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0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 1. 10. 22. 접수 제92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. 10. 28. ‘C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,302,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(청주지방법원 2021차전7899)을 발령받았고, 2021. 11. 16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C는 딸인 피고에게 2021. 10. 19.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고 한다)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. 10. 22. 접수 제928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’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,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808 판결,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). 한편,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

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므로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면 그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‘7, 8년 전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등기만 2021. 10. 22. 마친 것이다’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2호증, 제3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(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),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). 피고는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의 진행상황 및 채무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희진

별지